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완석

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6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

-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→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
(제명)

- 점용기간 이 → 점용기간이(안 제3조제2항)

나.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 변경 (안 제3조제4항)

- 5천원 미만 → 1만원 미만

다.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일 신설(안 제5조제3항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면제 금액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1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명 및 안 제3조제2항은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를 변경함.
- 안 제5조제3항은 징수교부금을 6월 말, 12월 말 실적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도록 교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5. 15.~'20.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금액의 개정 사항 반영과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조례명 등 띄어쓰기 변경 및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일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